

특집 - 檢·警 수사권 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檢·警 공동주최 공청회

경찰청이 지난 4월 11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검찰청과 공동으로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으나 핵심 쟁점인 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 195조와 196조의 개정여부를 두고 검찰의 양해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는 허준영 경찰청장과 김종빈 검찰총장의 인사말, 경과보고가 끝난 후 2부 토론으로 이어진 가운데, 검·경 두 기관 총수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먼저 인사말에 나선 김종빈 검찰총장은 일선 경찰서의 수사 관행을 겨냥해 ‘그동안 수사 현실에 있어서는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혹독한 비판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자,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에 ‘인권은 특정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정 기관에 지나치게 편중된 국가 기능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는 없다’고

에 따른 검증된 보완책도 없이 너무 과도하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에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다며 현행 형소법 195조·196조 개정의 시기상조론을 제기했다.

경찰측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현행 형소법에서 규정한 검·경의 상명하복 관계를 상호 대등·협력 관계로 바꾸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왜곡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종결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사후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국 서울대 교수도 “경찰을 수사주체로 형소법에 명문화하고 내란·외환·국기·국교·공안·살인 등 12개 중요범죄의 경우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 이후 검사의 수사보강 요구 등으로 보충해 나가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인기 의원 주최 국회정책 토론회

이인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용희 국회 행사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국회의원과 및 검·경 관계자, 경우회원, 방청객 등 2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고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場이 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인기 의원은 『경찰 수사권 독립은 피의자의 인권 신장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며, 지난해 비로서 경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전제하고 『이에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검·경간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뜻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경찰대학 행정학을 통해 『경찰 수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검찰제도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대학 경찰학과 이동희 교수는 『일제로부터 전수받은 검사주재 現 수사구조는 검찰권의 비대화,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강화, 검찰의 수사중심적 조직운동이라는 사실들과 결부되어 검사지배형 수사구조라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기형적 수사구조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형사절차상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바람직한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일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석 변호사도 『광복 직후 법적체계를 완전히 정비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구 형사소송법하의 검사주재형 수사

수사권 조정은 피의자 인권신장과 효율적인 수사측면에서 고려돼야

과 이용혁 교수는 「제왕적 검사지배형 수사권 구조에 대한 실증적 평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 수사권 구조는 비교국가적으로 접근할 때 제왕적 검사 지배형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으며,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및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면서 『현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더 적합한 주재자는 기소만을 위해 노력하는 법률가로서의 검찰이리라 보다는 오히려 다면적인 지역 사회내에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혁 교수는 『형소법 195조, 196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미봉책 보다는 형사체계의 근간을 변경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수사권 모형을 만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대 법학부 이재석 교수는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

구조를 유지하다 보니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일제하의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동안 이루어 놓은 민주화의 성과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나 발언권이 향상되어 형사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복잡해져 가는데도 지난 50년간 수사구조에 대한 논의는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면서 『이제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주체적으로 담당하고 검찰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사에 관여하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는 『현행 수사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수사권한을 인정하는 검찰의 실질적 수사지휘 방안이 필요하며,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 국민권익의 문제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기관 이기주의라는 지적에 대해 검경 상호간 솔직한 자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57년전에 형소법 바뀌

- 상호협력 관계로 발전 -

—— 이 동 희 (경찰대학 교수·법학박사)



계수한 1922년의 대정형사소송법(구형사소송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 법들은 대륙법의 직권주의적 소송구조를 계수한 것이지만, 일제가 군국주의의지를 위해 검찰권을 극도로 비대화시켰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수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던 당시의 대륙법체제와 달리 검사가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보유하고 수사를 주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독점하여 편의적으로 행사하였고, 형집행을 담당하는 등 형사절차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검찰과소’라고 강하게 비판받는 성격의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 근대적 형사사법제도를 이 땅에 미처 정착시키기도 못한 채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이러한 일본식 형사절차를 강요받게 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 총사령부는 이점의 일본의 수사상 인권침해실태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전후 일본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다. 그 개혁의 방향은 수사는 경찰에게 전담시키고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공판정에서의 사실입증에 주력하는 미국식의 인권보장적 형사절차를 일본에 이식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도는 미국헌법의 인권보장적 조항을 대폭 수용한 새로운 일본헌법(1947년)의 제정 및 이러한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는 영미법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일본형사소송법(1948년)의 제정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현행 일본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제 일차적 수사기관으로서 본래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당사자로서 공판활동에 주력하나 다만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충적·보정적 수사를 담당하는 제 이차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

겨진 것은 연합국군총사령부와 일본의 보수저항세력과의 절충적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본의 패전후의 검찰과 경찰의 변화와는 판이하게 다른 역사를 걷게 된다.

광복 직후 미군정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의 인권침해적 형사절차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식의 개혁을 이 땅에 도입하여 검찰과 경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사절차에 있어 영미식의 검경관계가 일부 실현되기도 하였으나, 법적 체계를 완전히 정비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그 주도권은 검찰측으로 넘어갔다. 당시 경찰은 일제 식민지 경찰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는 명망있는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그 신뢰도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4년 현행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우리의 입법자들은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의 산물인 검사주재형 수사체제를 그대로 존속시켰지만, 장래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권력의 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원리를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철저하기 위해서는 영미식의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형사절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강력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함에 그치지 않았다. 재판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강화해온 역사속에서 검찰은 법규정정에 있어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실로 다양한 수사지휘조항을 각종 법규에 마련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제도로 명명할 정도로 세계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형사사법제도가 탄생하였다.

21세기를 맞이한 현재, 우리의 시대 상황은 이미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수사절차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역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으며, 경찰의 자질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이제 수사권조정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견제적이면서도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시대적 당위이다. 날로 흉폭화·광역화·지능화되어 가는 현대의 범죄로부터 우리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일류경찰을 바란다면 적어도 책임에 상응한 권한은 부여하여야 한다.

